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독일의 기업평가제도 도입

유럽이 통합되면서 유럽연합의 가장 기초적인 목표인 경제적 통합을 실현하고자 기업들의 투자와 경제활동의 보장을 위한 보다 객관적인 회계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회계기준이 성립되기 전까지 유럽 각국에서는 회계기준(GAAP)¹⁾을 개별적으로 적용하였다. 이에 유럽은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상이한 회계기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다.

국제회계기준(IFRS)²⁾의 도입에 따라 독일도 국제회계기준을 자국의 법률에 수용하여 기준에

있던 기업평가사령을 2005년 새로 정비하게 되었다. 정비된 기업평가사령에는 기업 유형 자산의 평가 권한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명시함은 물론 그에 따른 방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자산 평가의 범위와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업평가사령을 중심으로 권한과 절차 및 방식과 감정평가사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업평가사령에서 포함하는 공인회계사의 권한과 감정평가사의 권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1)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영어: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이란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대한 재무보고서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제표등의 작성시 따라야 할 기준 또는 원칙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흔히 줄여서 GAAP라고 표현하고 '깡'이라고도 말한다.
- 2) 국제회계기준(國制會計基準, 영어: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회계기준으로, 현재 117(2009기준)개 국가에서 채택되었거나 도입 예정에 있다. 미국 등 IFRS를 도입하지 않고 자국의 GAAP을 적용하는 국가도 IFRS와의 호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2011년부터 IFRS를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I. 기업평가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의 개념

독일에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기업평가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관계로 기업평가사가 평가하고 있다. 제2조 제1항 WPO (Wirtschaftsprüfungordnung; 기업평가사령) 규정에 의하면 기업의 경제적 가치의 평가 이행, 기업평가와 관련된 직업상 공인의 행사에 관련된 법적의무의 준수 필요성과 목적 달성을 위한 행동권과 또한 적용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이 조항은 모든 기업평가의 범위에 적용되며 또한 기업 유형 자산 평가의 모든 실무적인 활동범위에도 적용된다.³⁾

1. 기업평가사제도의 도입 배경

2005년 2월 기업평가사협회 및 독일 기업평가사연맹은 통일된 고품질의 회계기준 제정의 필요성을 위해서 공통적인 입장의 초안(명령 1/2005)을 제안하였으며, 2005년 10월15일까지 이를 위한 개정, 보완을 위한 법률안을 준비하였으며 그 결과 2005년 12월 31일 이후에 법령1/1995년의 규정이 보완되었으며, 2004년 12월 27일⁴⁾에 제정된 회계감사에 관한 감독법에 의하여 제55b조의 규정이 WPO에 첨가되었다. 기업평가사의 수정과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히 제2조 제1항 WPO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평가의 이행, 기업평가와 관련된 직업상의 권한 행사에 관련된 법적의무의 준수

의 필요성과 의무의 이행 또는 적용에 관한 감독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기업평가사에게 부여되었다(기준확정제도).

(1) 기업평가사

기업평가사령 제1조에 의거하여 기업평가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제1조 [기업평가사 및 기업평가사협회]

- (1) 기업평가사는 기업평가사로 공식적으로 임명된 자이다. 임명은 인가절차 및 국가고시절차에 따라 개인적 및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를 입증한 자에 한한다.
- (2) 기업평가사는 자유로이 직무활동을 한다. 기업평가사의 업무범위에는 영업적인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 (3) 기술평가사협회는 인가를 요한다. 인가는 기술평가사의 조합으로서 책임 있게 운영함을 입증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2) 기업평가사의 업무 범위

기업평가사의 업무범위는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제2조 [업무범위]

- (1) 기업평가사는 특별히 기업인의 연말결산



3) 기업평가학술지 2006 p. 1332 참조. 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한 가치평가와 기업의 수익과 관련한 평가.

4) BGBl. 2004, Teil I, Nr.76 v. 31.12.2004, 3846 ff.

에 있어서의 경제상의 가치평가의 직무를 수행 하며 또한 평가상의 결과와 실시과정에 관한 비준서를 공시하여야 한다.

(2) 기업평가사는 자신을 고용한 위임자에게 현존하고 있는 규정의 전제하에서 세무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조언하거나 또는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기업평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속적인 권한을 가진다.

1. 기업상의 경영관리에 대해서 업무상의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사처럼 행동할 수 있다.
2.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조언 및 다른 이해관계에 있어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3. 신탁의 관리에 대한 권한이 인정된다.

가. 평가범위

기업평가사는 WPO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와 함께 연말결산 및 정세보고에 관해서는 법률을 통해서 규정된 평가 방식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며 작성의 권한을 가진다. 아울러 합병결산 및 합병상황의 보고에 관한 유보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원칙에 의거하여 규정된 연말, 합병결산의 평가 및 예를 들면 증권거래법에 의거한 특별평가와 같이 기타 법적으로 규정된 평가를 할 권한이 있다.

나. 기업평가사의 기능적인 측면

기업평가사는 기업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광의의 기능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기업평가사는 중립적인 감정평가사의 기능적인 측면에 따라 감정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⁵⁾ 다만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 독립적인 기업의 평가의 협회와 연관된 독자적인 방식, 객관적인 기업자산의 방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조력자로서의 기능적인 측면을 가진다. 기업의 경제상 현안에 대해서 상담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세무상의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업무 범위에서는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없이 조언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현 독일에서는 기업평가사의 세무상 상담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관청 및 재정법원에 대한 납세의 무자의 대리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기업평가사는 그 이외에 법률상담 및 중재감정인과 중재자로서의 권한이 인정된다. 특히 기업평가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현안 및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또는 법률적 조언없이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업평가사는 법률상의 처리, 법률상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다. 그 이외에 기업평가사는 협회의 주관적인 가치관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중재감정관 또는 중재자처럼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의 법적근거는 제2조에 의거한다.

5) 참조. 기업평가학술지, 23/2005, p.1305. 기업평가사령 제2조 제3항.

(3) 공인회계사의 정의

공인회계사는 2005년 기업평가사령에 편입되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28조 [직업군과 직업명칭]

- (1) 공인회계사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인되거나 또는 임명되어진 자 및 또는 공인회계사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회계사협회라 함은 이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계사협회로 공인되어지거나, 기업평가사협회처럼 공인되어진 협회, 즉 공인된 회계사협회를 말한다.
- (2) 공인회계사는 직업분야에 따라 공인회계사라는 직업 명칭이 부여되며, 회계사조합은 회계사협회로 명명되어진다. 여성도 공인회계사라는 직업 명칭을 가질 수 있다.
- (3) 공인회계사 및 회계사협회는 기업평가협회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제58조 1항이 준용된다.

(4) 공인회계사의 업무범위⁶⁾

2005년 공인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공인회계사의 제도가 기업평가사령에 포함되어 현재 공인회계사의 업무 범위는 기업평가사령 제129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29조 [공인회계사의 업무범위]

- (1) 공인회계사는 경영상의 회계제도의 범위에 따른 재무보고, 특히 최종결산감사 및 부기 감사를 실행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회계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는 감사비준서를 공표한다. 감사비준서에는 법률상의 규정에 의해서 실행된 감사결과의 확인서 및 산정확인서가 포함된다. 특별히 공인회계사는 직무상의 의무에 상법 제316조 제1항 제1문에 의거한 중소기업, 상법 제264조 a(제267조 제2항)의 의미에 따른 유한회사, 합명회사의 연간회계감사의 시행이 포함된다.
- (2) 공인회계사는 위임자의 세무문제와 관련하여 규정에 따라 조언 및 대리할 수 있다. 국가와 연관된 세무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 조력의 권한이 있다. 이 권한은 제3자에게도 통용된다.
- (3) 공인회계사는 다음과 각호의 권한이 있다.
 1. 경영상의 회계영역 회계사의 직무범위에 있어서 감정평가사와 같은 권한이 발생할 수 있다.
 2. 경제상의 문제점을 조언할 수 있으며 다른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중립을 지킬 수 있다.
 3. 신탁자의 행정업무 권한이 있다.

**6) www.bvb.org 공인회계사의 업무활동.**

1. 신탁업무 - 협력유지, 사업자의 권리행사, 유연집행, 자산관리
2. 감정평가사의 업무 - 경영사의 출납사무, 중소기업의 평가, 보상금 책정, 협력평가, 증식자산의 평가, 기업재정 결산, 기준에 대한 국제조직기구 9000에 의거한 공중
3. 감사 중소기업회사의 연말회계감사, 소규모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연말회계감사. 합명회사의 연말회계감사. 자본금 증좌와 관련한 감사. 정해진 변경에 관련한 감사, 중개 및 건축 중개소의 감사
4. 그 외 감사업무 - 경영 및 경제적가치의 조사, 합병, 설립, 상법 제264 a조에 근거한 합명회사의 감사, 유한회사와 관련된 상황보고, 증권거래법 제36조 금융업종의 감사, 기업평가사령 제57a조에 근거한 기준의 관리

(5) 공인회계사와 기업평가사와의 관계

2005년 기업평가사령에 의해서 포함된 공인회계사도 기업평가사와 동등한 권한이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독일에서도 사회적인 관심이었다. 기업평가사령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면 공인회계사는 기업평가사협회의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평가사령의 규정의 공포로 인해 공인회계사는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결과적으로 2005년 기업평가사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는 기업평가사의 업무로 흡수되었다.⁷⁾

학설과 통례로 본다면 기업평가사는 공인회계사의 업무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어 진다. 공인회계사는 기업평가사보다는 협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공인회계사를 위해서 기업평가사의 권한을 부여하고자 기업평가사령 제13조 a⁸⁾에서는 공인회계사를 위한 시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감정평가사

현 독일에서는 법적인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의 임무에 관하여 확실한 법적근거와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감정사는 전문분야의 지식을 소유한 자 또는 경험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연인이며 또한 전문적인 지식은 개인적, 독립적, 공정성 및 양심대로 수행되어야 한

다. 이러한 정의는 GewO 제36조와 UWG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감정 활동에 대한 특수한 전문지식이 존재하지 않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감정사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감정평가사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감정평가의 임무를 지니며 이는 사실관계의 결정, 실무상원칙의 확정 또는 사건, 상황의 실질적인 평가 목적을 위한 결론의 추론에 대한 감정의 임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객관성이 존재해야 함은 물론 다수의 사람들도 용인할 수 있는 전문적인 판결이어야 한다. 다수의 감정평가는 제3자의 주장과 지속적인 물품의 가치가 현존하는 관계로 감정평가는 각각의 정세에 따른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수락의 의사가 제시되어야 함은 물론 평가에 따른 확인 보증증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감정평가사는 독립성, 중립성을 유지하여 감정평가서의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감정평가에 따른 법률상의 조언과 법률상의 이행 임무는 법적으로 감정평가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감정 활동, 심사의무, 감독의무, 건축자재의 품질 검사, 확인서 작성, 중재감정의 실행, 중재재판상의 활동, 예를 들면 중재처럼 중재활동의 모든 대상인 감정평가 업무는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귀속된다.



7) 박사논문 Paulitschek, 기업평가, p. 85.

8) 시험과목은 조세법과 경제법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필기와 구두시험이 있다.

- 재판상 감정(법적근거: 민사소송법 제402조⁹⁾ 참조 및 형사소송법 제72조 참조¹⁰⁾) 사법 적전 문가처럼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 국가에 고용된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법적 근거: 제36조 참조, 제91조 제1항 제8호, 이에 관해서 규정한 고용단체의 약관).

- 행정상 또는 국가에서 인정한 감정평가사의 조사활동 및 감독활동(법적근거: 독일연방법, 주법에 근거한다).

- 특수한 직무 법에 근거한 감정 활동 및 조사 활동(법적근거: 기업평가사협회를 위한 기업평가사령, 환경감시자를 위한 생태계보호법).

- 법률상 등록된 직업군을 통한 배상금 감정, 업무의 특성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배상금이 속한다(예: 의사, 변호사, 건축사, 엔지니어).

감정평가사의 직무활동은 본업에 의하며, 본업 외에 부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외에 감정평가사는 제18조 EStG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등급을 정해서 세금을 평가할 수 있다.¹¹⁾ 감정평가사의 지위는 적용되는 행정 절차에 따라 분류된다.

(1) 기본원칙상 일반적인 규정상의 적용에 대한 권리 현장 검증 및 증인 또는 피의자의 위치에 있어서 사건의 현안에 대한 증명에 대한 감정인에게서

류의 열람을 허가하며 또한 권리를 인정한다. 감정인은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으며, 배상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지출기일은 법원이 정한다.

(2) 공인체계

국가에 고용된 감정사와 개인적 또는 개인적으로 자격이 있는 감정평가사의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 국가에 고용된 감정평가사는 특별한 법적 규정에 근거하여 공식적으로 고용된 상태 또는 국가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의미하며, 개인 또는 개인적 자격이 있는 감정평가사는 관청 또는 국가의 승인없이 감정평가의 시장에 있어서 통용되는 직무상 및 자율영업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자를 의미한다. 국가의 승인을 받은 감정사와 개인자격이 있는 감정사는 공법상의 관계에 기초를 두거나 또는 청부계약에 의거한 개인적인 위임의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차이점이 없지만, 국가의 승인된 감정평가사는 정부의 법적 기초에 관한 심사의무와 감독임무의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가. 국가에 공인된 감정평가사

국가에 의해서 공인된 감정사는 행정상의 임무를 실행할 권한과 감독을 실행할 권한이 있다. 국가에 공인된 감정사는 국가 관청에 복속한다.



9) Für den Beweis durch Sachverständige gelten die Vorschriften über den Beweis durch Zeugen entsprechend, insoweit nicht in den nachfolgenden Paragraphen abweichende Vorschriften enthalten sind

10) Auf Sachverständige ist der sechste Abschnitt über Zeugen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nicht in den nachfolgenden Paragraphen abweichende Vorschriften getroffen sind.

11) Zur Zersplitterung des Sachverständigenwesens vgl. Stober, Fn.1, S.546; Kolb, DS 1998, H. 4, S. 6; Bund-Länder-Ausschuss "Gewerberecht", GewArch 2002, 366 (370).

-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정에 근거하여 활동하며, 그 결과 대상에 대한 행정상의 조사(예: 자동차, 엘리베이터) 또는 성과의 감정을 실행한다(예: 토목안전율의 검사).
- 특수한 범위 아울러 개인적 또는 사법상의 감정 활동을 실행할 수 있으며 또한 공식적인 경우에는 국가 감정사로서의 임무를 대리할 수 있다.
- 다수의 구성원을 조직하여 국가에 의한 조직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예: TÜV). 국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관청의 승인을 받은 개인 감정사도 국가 조직기구에 포함 될 수 있다(Lebensmittelgesetz).
- 정부기관의 활동인 경우에는 국가의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비용이 산정된다.

나. 공식 임명된 감정평가사

- 특별히 전문적 지식이 입증된 자(영업령 제36조).
- 공식적인 임명과 관련해서 자신의 임무를 행사함에 있어 독립성, 중립성, 개인의 자율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영업령 제36조 제1항).
- 공식적으로 임명된 감정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형법 제132 a조 제1항 제3호).
- 감정사단체에게 형사상 비밀엄수의 의무가 부여된다(제203조 제2항 제5호).
- 입법기관으로부터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감사 및 평가권한을 가진다(예: 민법 제

641 a조, 민법 제538 a조 제2항 제3호, AltfahrzeugV 제6조).

다. 개인감정사

- 관청 또는 정부기관의 승인없이 감정 활동을 이행하는 자
- 법적으로 비밀엄수의무에 복속되지 않음은 물론 공법상의 의무사안에 복속되지 않는다.

3. 사례로 살펴본 감정평가사와 기업평가사의 법적지위

(1) 감정평가사의 법적 지위(기업계약에 의해 고용된 감정평가사의 평가범위)¹²⁾

이 사건은 법적으로 고용된 감정평가사의 신빙성에 관한 사건으로 대주주의 보고서에 대한 감사권한의 존재 여부, 감정평가사는 기업상의 계약에 따라 협약된 배상 및 보상조치의 타당성을 심사권한의 존재 여부 및 평가항목을 자신의 보고서에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사건으로서 법원은 감정평가사의 임무는 대주주의 보고서에 대한 감사권한에 한하지 않고, 기업상의 계약에 따라 협약된 배상 및 보상조치의 타당성에 대한 권한이 있음을 관시하여 다른 기업평가사의 업무 심사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감사, 설명할 권한을 인정한 사건이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 감정평가사에게는 이러한 임무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 또는 공법상 고용된 감



12) 2006년 11월 14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 판결, 사건번호: 3-5 O 73/04

정평가사에게 권한을 한정하고 있다.

(2) 기업평가사의 법적 지위

현재 독일의 판례를 살펴보면 기업평가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기업평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평가사에게 양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영상의 조세문제에 대해서도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 권한이 확대되고 있다.

가. BGHZ 100, 132-136¹³⁾

이 사건은 기업평가사의 업무범위와 신탁관리 업무활동에 대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법원은 기업평가사의 업무범위에 기업의 경제적 평가 및 비준서를 인정하였으며, 세무사의 권한 및 기업의 경제적인 감정평가사의 업무활동을 인정하였다(WPO제2조). 이러한 근거는 기업평가사령의 규정에 의거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BGH 3. 281/05¹⁴⁾

기업평가사의 신탁업무행위에 관련하여 기업의 유형자산평가와 세무사의 권한 인정여부 문제에 관한 사건으로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WPO 제2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기업평가사의 직무구조에 따라 기업

평가사도 세무사처럼 신탁 관리상의 업무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기업 형자산의 평가는 경영학상의 분야에 대한 직무상의 경험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평가사 및 기업평가협회에 양도되어진다고 하였다.¹⁵⁾

II. 기업 자산의 정의

1. 기업자산가치의 기본적인 내용

기업의 가치는 재정적인 목적을 제외한 법령에 의거한 기업소유의 순수입과 연관된 기업재산인 현금자산으로 정의된다(기업소유의 순수입). 현금자산의 조사와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기업에 대한 적합한 선택적 투자에 의한 출자에 관해 규정된 이자율인 자본이자규정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기업의 가치는 오로지 기업의 소유물에서 파생된 기업에 대한 재정상의 흑자는 경영관리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 보편적이며, 재정상의 가치는 경영상의 필수적 자산이 아닌 기업의 승계 및 매각에 따라 발생한 재정상의 흑자를 의미한다.

기업자산의 가치는 수익가치방식 또는 Discounted Cash Flow 방식에 의거하여 잠정성공가치처럼 조사되어 질 수 있다.



13) BGHZ.100, 132/136. 1987년 3월 11일.

14) BGH 3. 281/05 2007년 2월 1일

15) BGHZ.100,132,135

2. 유형고정자산¹⁶⁾

유형고정자산이라 함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유형고정자산의 가치평가는 건물, 옥외시설 및 특수시설, 부속시설과 같은 구조물을 포함한 미개간 또는 개간한 토지의 평가를 의미한다. 유형고정자산의 현시가 산정은 각각의 유형고정자산의 전형적인 이익을 위해서 시장조건에 근거 하며, 그 이외에 자산가치 단독평가의 기본원칙은 토지, 대지와 아울러 건물에 따라 발생되는 분할된 고정자산 가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건물의 한부분에 속하는 기술적 또는 기능적인 면은 규정에¹⁷⁾ 의거하여 동일하게 평가 된다.

3. 독일기술평가협회의 유형고정자산 평가 방식

현재 독일기업평가사협회(IDW)는 2005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회계보고에 관련한 자산가치의 평가에 대한 절차의 초안을 형성함은 물론 유형고정자산평가의 기본적인 근거를 세웠다.¹⁸⁾

(1) 시장가격기준방식(marktpreisorientiertes Verfahren)

동종의 유형고정자산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

로 시장가격기준 방식을 취한다(시장가격기준방식). 이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차액가격에 대한 토지의 지가 가치와 현존하고 건물의 가치는 시세에 따른 거래가격에 근거를 두게 된다.

(2) 간접가격비교방식(mittelbarer Preisvergleich)

독일에서 현존하는 토지에 대한 지가의 조사에 관해서 평가된 가격의 차이와 아울러 상이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위원회로부터 조사된 지가 표준치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진다(간접적 가격비교). 가격 차이는 상황에 따른 비교대상의 특성과 관련하여 조정되며, 이는 현존하는 건물의 평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건물과 관련한 실내설비, 외내관 스타일, 연도, 현재 상태 등의 비교는 행해지지 않는다.

(3) 자본가치기준방식(Kapitalwertorientiertes Verfahren)

경작용도인 토지는 경작지의 수확량의 기초에 의거한 규정에 따른 평가방식을 이용한다(자본가치기준 방식).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시장에 있어서 거래가격, 연수익을 전제로 한다.

(4) 기준비용방식(kostenorientiertes Verfahren)

기준비용방식은 건물, 옥외시설, 기타시설과



16) 기업평가의 실행에 관한 기본원칙을 위한 독일기업평가사협회 기준, 2005.10.18. 참조. 기업평가학술지 24/2005, p.1421.

17) 기업평가와 관련한 경제상의 기업의 단일성의 평가의 원칙의 효력과는 달리 자산가치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국제회계기준 3(IFRS 3) 및 국제회계규칙 36(IAS 36 2005년 이전)에 근거한 단독평가의 원칙이 적용된다.

18) 기업평가잡지 2005, p.1441-1442

같은 시설물은 토지로부터 분리된 후에 조성된 비용으로 평가함을 말한다.

(5) 동산 평가

기술시설 및 가동설비시설, 영업시설의 평가에 대해서는 시장가격기준, 자본가치기준과 기준비용의 방식이 고려되어진다. 시장가격기준방식은 기술시설과 관련된 경영내부시설, 영업내부시설 또는 특히 그에 따른 시설의 매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본가치기준방식의 평가 또는 인수의 제조달비용의 평가가 실행된다(IFRS 3.B 16).

인수의 제조달비용은 과거 정세에 따른 구입가격 또는 재건비용 또는 제조달비용의 공급위임자

를 통해서 조사되어지며 그리고 제조사비용시가의 시기 감가상각액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 선택된 방식은 독립적으로 상황에 맞게 기능적, 경제적으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가격하락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일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유용기간이 있거나 또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동산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기간에 대해서 가산금을 책정하여 평가한다.

(6) 채무, 잠정채무의 평가

채무와 잠정채무는 IFRS 3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영리시점에 현시가를 첨부하여 산정한다.

(7) 도표로 본 독일의 감정평가 방식



III. 감정평가

기업평가사의 명백한 기업 가치의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는 만큼 이론의 소지가 없다.¹⁹⁾ 평가감정은 기업평가사의 어떠한 측면에 의해서 실행되어지는가에 대한 근거 및 평의 가치계획(객관적 기업가격, 주관적인 판단가격, 합의가격)이 기본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행동양식의 타당한 설명이 요구되며 따라서 응용된 평가방식(DCF(Discouted Cash Flow)방식, 수익가치방식)이 수용되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예측, 어음할인매입, 재정흑자에 관련하여 기초를 이루게 된다. 자료에 근거하는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가치의 조사의 본질적인 승인이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였는가에 대한 보고의 합법성에 관한 기본규정에 상응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가결과의 신뢰성 판단은 평가된 기업의 거래소 시세에 따라 존재하게 된다.

A. 감정요지

감정의 요지에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업무의 제시

- 위임자
- 위임(감정계기; 가치평가의 실행에 따른 기능적 측면)

2. 평가목적의 설명

- 법적인 기본적 근거
- 경제상의 기본적 근거
- 세무상태

3. 정보에 현존하는 기본적인 평가의 제시.

- 과거에 대한 분석
- 동의를 기반배경으로 하는 계획회계
- 제3자의 평가를 포함한 의견의 이용 및 특성
- 계획의 신빙성 평가
- 인용된 정보에 대한 책임의 제한

4. 경영상 필요치 않은 자산의 특별평가 제시

5. 경영상 필수적인 자산 평가의 제시

6. 평가결과의 신비성의 평가

7. 결과

III. 결론

유럽의 통합으로 인하여 EU 국가간 투명한 회계기준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국제회계기준의 수용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로 상이한 회계기준은 통일화 되었고 국제회계기준 이전에 발생하던 회계기준의 상이함으로 인한 재무의비 교가능성이 낮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투자자 및 에널리스트와 저널리스트의 재무표의 재작성의 부담이 감소하게 되



19) 기업평가학술지 2005. p. 1320 참조.

었다. 이에 따라 독일도 2005년 국제회계기준을 자국의 회계기준에 도입하게 되었으며 독일은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서 현존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의 제도가 기업평가사의 제도로 흡수되었으며, 공인회계사는 기업평가사의 일원으로 인정되고 있다(WPO 제128조). 따라서 2005년 이전까지 공인회계사, 기업평가사, 감정평가사, 세무사로 공존하던 것이 2005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현재는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업평가사로 나누어져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결과로 현재 독일에서는 기업평가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평가사는 회계, 기업자산평가, 조력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는 WPO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평가사협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평가사의 권한이 일부 인정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전에도 기업평가사의 기업유형고정자산의 평가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2005년 수용) 후에도 기업평가사의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에 반해 독일에서는 법적인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법적근거와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기본적으로 GewO 제36조와 UWG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정사의 정의가 내려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사건의 경우에 각각의 법률과 부합되어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독일의 감정평가사는 개인과 국가에 의해 임명되거나 행정상 소속되는 감정평가사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또한 구체적으로 각 업무에 따라서 세부화 되어 있다. 개인 감정평가사는 기업의 가치 판단보다는 채무관계에 따른 건물, 토지, 자동차의 가치에 대한 개인소유의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박 광 식

(독일주재 외국법제조사원)